

2012. 12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aT

Monitoring Export Issues of Main Countries

# 주요국 수출현안 모니터링

미국



## CHAPTER

## 01

## 통관제도

제1절 통관제도 일반	81
1. 관리 법률체계	81
2. 통관수속 및 화물의 통관	82
3. 원산지 규정	83
4. 구비서류	83
제2절 품목별 통관제도	84
1. 수산물	84
2. 신선과일	85
제3절 통관사례	89
통관부서 연락처	90
자료출처	90
1. 웹사이트	90
2. 수입식품관련법규	91
3. 관련책자	91

## CHAPTER

## 02

## 검역제도

제1절 검역제도 일반	95
제2절 품목별 검역제도	96
1. 식물검역제도	96
2. 동물검역제도	97
자료출처	98

CHAPTER

# 03

## 라벨링제도

제1절 라벨링제도 일반 ..... 101

제2절 품목별 표기방법 ..... 107

1. 건강보조식품 ..... 107

2. 신선농산물 ..... 108

제3절 라벨링 사례 ..... 108

제4절 통관보류 및 억류사례 ..... 109

CHAPTER

# 04

## 통관보류 및 억류사례

1. 일반현황 ..... 113

2. 한국식품의 통관억류현황 ..... 114

3. 주요 한국식품 통관보류 및 억류사례 ..... 114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Monitoring Export Issues of Main Countries*

## 통관제도

### 제1절 통관제도 일반

#### 1. 관리 법률체계

##### □ 미국의 식품 수입정책

- 미국은 2001. 9. 11 테러, 탄저균사건 이후 식품공급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새롭게 법률을 제정하는 등 위기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식품분야도 “공공보건과 바이오테러대응법(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 public Law 107-188:The Bioterrorism Act)”을 2002. 6.12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바이오테러대응법은 5개 주제(Title)로 구성되어 있고 바이오테러의 3번 주제 (TitleIII)의 하부주제 A(Subtitle A(식품공급의 보호))의 세부조항은 아래와 같음
  - ① 식품관련시설의 등록
  - ② 식품수입의 사전신고
  - ③ 식품에 관한 기록의 정비 및 보존
  - ④ 행정적 억류조치

## □ 관세제도

- 관세법(Customs Act) : 미국의 통관 및 관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수입시 준수사항(Importation), 관세평가(Calculation of Duty), 감세 및 환불(Abatements and Refunds)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Customs Tariff) : 관세부과 및 부과된 관세의 환불에 관한 규정
- 관세평가 방법 : 미관세청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관세율표는 “Harmonized Tariff Schedule”로 매년 당해연도의 품목별 정확한 관세율을 표시하고 있음

## 2. 통관수속 및 화물의 통관

### □ 미국의 농산물 수입절차

- ① 수입회사가 입국신청서(Entry Notice)를 접수시키고 관세청의 통과를 위한 보증금(Customs bond)을 준비
- ② 국토안보국(CBP)내 관세국경보호청에서 FDA에 수입신고서를 접수시키고 수입허가 결정을 요청함
- ③ FDA는 수입서류를 검토하여 수입품에 대해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즉시 입국이 허가됨
- ④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FDA가 샘플조사를 하며, 이 조사는 FDA직원이 샘플을 수거해 FDA 실험실로 조사를 의뢰함으로써 이루어짐
- ⑤ 샘플조사 결과 FDA 실험실에서 안전하다고 판정되면 그 즉시 입국이 허가되고 불합격 판정이 나면 입국이 거부됨
- ⑥ 불합격 판정이 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

### 3. 원산지 규정

#### □ 개 요

- 미국정부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원산지 표시 규정은 미국 관세청 (U.S. Customs)에서 주관하는 것으로써 FDA에서 관장하고 있는 라벨링 (Labeling) 규정과는 별도의 것임
- 따라서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할 경우는 미국 무역 세관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됨

#### □ 원산지의 정의

- 이 규정에서 말하는 원산지란 수입되는 물품이 생산, 제조, 또는 개조되는 국가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최종 소비자 (Ultimate purchaser)가 구입할 때 그 상태의 물품을 의미함

#### □ 원산지 표시법

- 국가명 - 원산지(Country of Origin)는 반드시 표준영어로 표기법에 맞는 영어로 된 국가 이름이라야 함. 따라서 한국상품일 경우, 반드시 Korea를 사용하여야 함 (예: Made in Korea, Product of Korea).
- 표시방법 - 표시방법은 3가지 규칙이 적용.
  - 눈에 잘 띄이는 곳에
  - 읽기 쉽게
  - 지워지거나 분실되지 않게
- 따라서 아주 작은 활자로 포장지 구석에 표시할 경우 원산지 규정법을 위반하는 것이 됨

### 4. 구비서류

- FTA 수입통관 시에는 수입상품의 품목번호, FTA 관세혜택 등을 확인하고 수입허가증, 원산지증빙서류를 준비해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하며, 수입 및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함

- 수입통관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인이 원산지증명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해야 함
-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

발급방식	자율발급
발급자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증명서식	한국정부 권고서식
유효기간	4년
사용언어	영어, 한글

## 제 2 절 품목별 통관제도

### 1. 수산물

- 미국 식품의약청(US FDA)은 미국에 수입,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있음. 수입업체는 화물이 항구에 도착한지 5일이내에 세관에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FDA는 선박도착을 통지받고 서류를 검토한 이후 검사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됨. 대부분은 수입되는 수산물이 금지품목이 아니거나 질병의 의심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아니라면, FDA는 생선 샘플을 검사하지 않고 “May Proceed Notice”를 세관과 수입업체에게 송부하여 수입물품의 반입이 가능함
- Labeling of Container : 미 세관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여 눈에 잘 띄는 곳에 원산지 표기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냉동생선은 소매업체나 레스토랑에서 녹여서 판매할 때까지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동상태여야 하며 수출을 위한 운송기간 중 포장과 냉동/습도유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미 식품의약청 (FDA)은 수산물의 가공과 유통단계에서의 위생을 위해 식품 안전프로그램인 HACCP을 제정하였으며 이 계획은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수산물 가공업체와 포장업체, 창고업체들에게 적용됨. 이러한 FDA규칙에 의해서 미국의 수입업체들은 해외의 공급업체들이 수산물의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HACCP를 통과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2. 신선과일

### □ 배

- 수출단지 지정 및 승인이 필요
- 승인된 봉지로 씌운 후 재배되어야 함
- 재배지 검사 실시
  - 봉지를 씌운 직후 : 한국 식물검역관 단독검사
  - 수확기 : 한국과 미국의 식물검역관 공동검사
- 수확된 과실에 대한 한·미 식물검역관의 합동검사 실시 후 한국의 식물 검역증 및 미국의 대외식물검역증이 첨부되어야 함

### □ 사과

- 한국에서 1.1℃에서 40일간 저온처리 후 미국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MB훈증 (48g/m<sup>3</sup>/10℃ 이상/12시간 등)처리를 해야함
- 한국의 식물검역소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을 첨부해야함

### □ 감귤

- 수출단지 지정 및 승인이 필요
- 한·미 식물검역관에 의한 공동 재배지검사 실시
  - 낙화 후 검사는 신규지역 지정시에만 공동검사
- 생육기간 중 감귤궤양병 검정을 위한 박테리오파아지테스트 실시

- 수확된 과실에 대한 함.미 식물검역관의 합동검사 실시
- 위생증 부기사항 : 여기 선적된 한국산 과실은 감귤궤양병에 감염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믿어지며, 미연방법규(CFR)319.28조 및 319.56조에 APHIS측이 명시한 모든 요건에 부합됨

## 다. 건강식품

### □ 정의

- 미국에서의 보조식품에 대한 정의는 1994년에 제정된 식품보조제품 건강 및 교육법(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 이하 “DSHEA”로 표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식품이란 일상적인 섭취식품의 영양소를 보완하기위한 식이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을 말함
- '94년 제정된 DSHEA이 규정하고 있는 보조식품 성분으로는
  - 비타민(Vitamin)
  - 미네랄(Mineral)
  - 허브 또는 기타 식물성 생약(Herb or other botanical)
  - 아미노산(Amino acid)
  - 식품대체성분(Dietary substance for use by man to supplement the diet by increasing the total dietary intake)
  - 엑기스(concentrate, metabolite, constituent, extract) 등이 있으며 그 형태 또한 정제, 연질캡슐, 액체, 파우더 등으로 다양한 편임
- 건강보조식품은 외형상 약품과 비슷한 형태를 나타내며 그 효과 또한 약품과 비슷하게 홍보되고 있으나 ‘식품’의 범주에 속해 있어 약품과 달리 사실상 판매전 미 식약청(FDA)의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검사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모든 보조제품은 포장표시를 통해 보조제임을 표기하여야 함
- 상기에 열거된 일반적인 성분이 아닌 새로운 성분이 포함된 보조식품을 미국에 판매하고자 할 시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는 그 성분이 현재 일반적인 식품성분으

로 알려지지 않은 것일 경우 그 성분이 식용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FDA에 증명하여야 함

- DSHEA에 의하면 약품 및 식품첨가물과 달리 보조식품의 경우 판매전 안전증명을 요구하는 법률적 조항은 없으나 제조업체는 여전히 제품의 안전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제품에 관련된 불만사항 및 문제를 접수할 경우 소비자안전을 위한 빠른 조치를 위해 이에 대한 기록과 조사 자료를 FDA가 요구시 제출해야 함

#### □ 건강보조식품의 라벨링 표기 주의사항

- FDA는 건강보조식품의 포장에 반드시 표기해야 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품명에 보조제 “Supplement”라는 것을 표시할 것, 제조업자와 포장회사 또는 유통회사의 회사명과 주소, 전체 성분 표시, 제품의 실중량 표시이며 보조제품은 영양표시를 “Supplement Facts”란 또는 “other ingredient”란에 각각의 모든 성분을 표기하여야 됨
- 제품의 일일권장량(섭취량)은 제조업자가 각 성분의 안전을 고려해서 결정하며 FDA의 검토나 허가사항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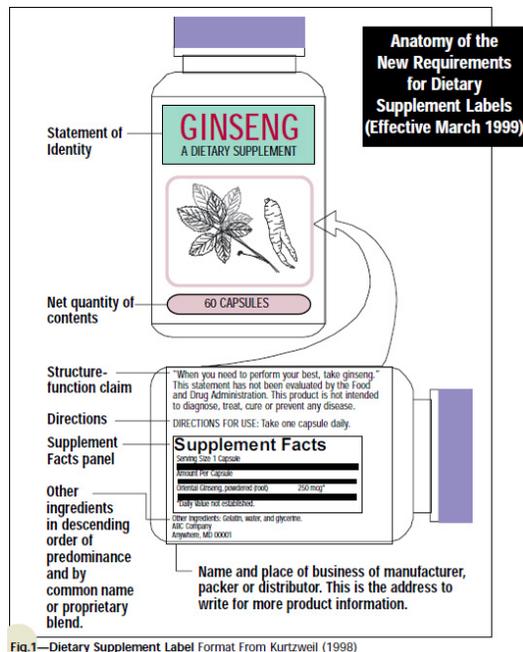


Fig.1—Dietary Supplement Label Format From Kurtzweil (1998)

## □ 제품의 효능표기시 주의점

- 법적으로 건강보조식품의 제조업자는 제품홍보시 ① 건강적 측면, ② 기능적 측면, ③ 영양성분 측면의 세 가지 내용을 강조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제품성분과 질병과의 상관관계 또는 건강과 관련된 성분의 조건, 제품 사용시 의도된 효과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소나 식품대체성분의 중량 등이 있음
  - ① 건강적 측면 - 제품에 칼슘성분이 있을 경우 ‘칼슘섭취는 골다공증 발생위험을 감소시킨다’는 문구를 표기할 수 있음
  - ② 구조/기능적 측면 - 영양소 결핍에 따른 질병언급(비타민 C 부족시 괴혈병 등) 및 영양소의 기능적 효과(항산화제의 세포활성기능 또는 칼슘의 골형성기능)
  - ③ 영양성분 측면 - 제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정도를 FDA에 규정된 “Good source”, “High”, “Free”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표기할 수 있음(제품이 Fat-free라고 표시하려면 일회섭취량에 지방성분이 0.5g이하로 함유될 것)
- 제품의 표시나 홍보문구 중 특정 질병이나 증상의 치료, 예방을 언급하는 것은 허가받지 않은 약품과 같이 불법이며 법적으로 허용된 보조제품성분의 인체에 대한 구조/기능적 영향을 강조할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이 FDA로부터 평가, 인정받은 것이 아니며 제품이 어떠한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의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됨
- 건강보조식품을 비롯한 대부분의 소비자 구매제품의 광고홍보는 연방 무역 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FDA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 허위, 과장광고문구 예시

- 제품하나로 모든 건강 문제와 증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 “류머티즘, 관절염, 전립선문제, 종양, 심장병, 혈관강화에 효능이 있음”
- 질병을 치료한다는 문구 - “종양감소”, “발기부전치료”, “기억력감퇴예방”

- 획기적이고 기적적인 제품, 전통적 비밀 성분의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품  
- “의학에 기초하고 검증된 자연건강성분을 사용한 획기적인 발명품”
- 과학적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 “세포증식”, “당 신진대사”, “열발생”,  
“인슐린 수용영역”
- 노벨상 수상과학기술 등의 허위인용 - “노벨상 수상기술”, “노벨상 수상자에 의  
해 개발”
- 기적적결과를 기술하는 환자나 의사의 문서화되지 않은 언급 - “이 제품을 섭  
취한지 한달만에 치매환자가 일상생활이 가능해 졌어요”
- 한정판매 및 선불지급필요 - “수량한정으로 서둘러야 하며 수량확보를 위해 선  
금지불요망”
- 제품불만족시 전액환불보장 - “1달간 8kg이 빠지지 않을시 전액환불보장”

### 제3절 통관사례

- 조미김의 경우 과거 영문 라벨 및 영양분석표 등 의무 라벨링 위반하여 억류되  
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지 마켓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현재는 포장 및 라벨링 개  
선으로 대부분 통관에 문제 없음
- 스낵김과 더불어 미국 현지 마켓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알로에음료의 경우 아  
직까지 성분표기 및 금지색소 사용에 따른 통관거부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색소  
사용 및 성분표기에 더욱더 유의 요망 필요

## 통관부서 연락처

기관명	기능/주요업무	연락처
Animal &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APHIS)	농작물 동식물 검역기관 검역관련 규정제정 USDA산하기관	Tel:202-720-2511 Fax:202-720-3982 www.aphis.usda.gov
Food & Drug Administration	농수산물을 포함한 식품류 수입시 통제기관 의약품 전반 규정제정 미 보사부 산하기관	HFI-40 Rockville, MD 20857 Tel:301-443-1544 Fax:301-594-6004 www.fda.gov
US Customs Service	미 정부 통관 전담부서	Tel:202-927-2095 Fax:202-927-1393 www.customs.gov

## 자료출처

### 1. 웹사이트

- 미국 식약청(FDA) : [www.fda.gov](http://www.fda.gov)
- 미국 관세청 : [www.customs.gov](http://www.customs.gov)
- 미국 농무부(USDA) : [www.usda.gov](http://www.usda.gov)
- 미국 동식물검역소(APHIS) : [www.aphis.usda.gov](http://www.aphis.usda.gov)
- 미국 식품안전검사국(FSIS) : [www.fsis.usda.gov](http://www.fsis.usda.gov)

## 2. 수입식품관련법규

- 미 연방 식품의약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as amended)
- 공정포장표시법(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 수입우유법/치환유법(Import Milk Act/Filled Milk Act)
- 연방 부식성 독 법(Federal Caustic Poison Act)
- 보건 및 안전을 위한 방사능 통제 법(Radiation Control for Health and Safety Act)
- 21주제 CFR, 특히 파트 1, 하부파트 E수입과 수출(Title 21 CFR, especially Part 1, Subpart E-Import and Exports)

## 3. 관련책자

- Importing Food into the United States - The Food Institute
- Guide to handling FDA Food Inspections - The Food Institute
- A practical guide to the regulation of seafood in the United States - Urner Barry publications
- A practical guide to FDA requirements - Urner Barry publications

## 검역제도

### 제1 절 검역제도 일반

#### □ 검역절차

- ① 수입허가증신청(수입상 → 농무부 동식물 검역국)
- ② 수입허가(동식물 검역국 → 수입상)
- ③ 도착통지서(수입상 → 부두/공항검역소[CBP])
- ④ 도착통지서 전달/유통경로 통보(부두/공항검역소[CBP] → 동식물 검역국)
- ⑤ 검역절차사항통보(부두/공항검역소[CBP] → 수입상)
- ⑥ 검역(CBP농산물 서비스)
- ⑦ 통관(CBP)

#### □ 검역기관

- 미국에서 동식물의 검역 및 식품위생에 대한 업무는 농무성 산하의 APHI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에서 담당하고 있음
- 주요임무
  - 항만이나 국경선을 통한 외국 농산물의 해충과 질병 유입방지
  - 유해 외국 농산물의 국내 반입에 따른 긴급조치 및 해소

- 국내의 동식물 질병에 관한 모니터링 및 결함 해결
- 국내의 가축질병과 식물 해충의 퇴치
- 과학적인 식물위생 규격 설정에 의한 농산물 수출 촉진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천연자원, 국민보건 및 안전에 대한 피해 예방
- 생명공학 및 유전자 조작기법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성 검증

## 제 2 절 품목별 검역제도

### 1. 식물검역제도

#### □ 관련법 체계

- 식물검역에 관한 기본법은 식물검역법(Plant Quarantine Act)이며 구체적인 수입규제에 관한 사항은 해외검역공고, 법령 등을 통하여 규정됨

#### □ 식물검역법

- 묘목(Nursery stock)의 경우 농무성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수출국에서 발행한 위생증이 미첨부된 경우에는 수입불가(제1조)
  - 묘목 : 야외에서 재배된 화훼묘목(Florist's stock), 교목(Tree), 관목(Shrub), 덩굴(Vine), 삽수(Cutting), 대목(Graft), 접수(Scion), 접아(Bud), 과수 및 관상수목의 핵자 및 종자 기타 번식용 식물 및 식물성 산물(제6조)
  - 다음의 것은 묘목에서 제외됨 : 목초종자, 채소종자, 화훼종자, 화단용식물, 기타 초본식물, 구근(Bulb), 뿌리(제6조)
- 상기 묘목이외의 식물류가 수입됨으로써 유해식물 병충해의 유입우려가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공포함(제5조)
  - 이때는 수입을 제한하는 품목 및 해당 국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결

- 정을 하기 전에 공고 및 입법예고(public hearing)과정을 거쳐야 함
- 미국에 분포하지 않거나 널리 분포하고 있지 않은 나무, 식물, 과실의 병이나 또는 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묘목이나 기타 식물에 대하여 병해충 발생국가로부터의 수입금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공포함(제7조)
    - 공고과정은 제5조의 내용과 동일
  - 본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칙(Rule), 규정(Regulation)을 제정 공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농무성 장관에게 위임(제9조)

## 2. 동물검역제도

### □ 위생검사제도(육류검사법)

- 육류 및 가금육의 위생과 안전검사를 위해서 미국 식품안전국(FSIS)의 검사요원이 미국 전역의 6,200개에 달하는 도살장 및 육류가공공장에 상주하면서 현행 법률에 의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검사시 중점을 두고 있는 규칙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모든 도축장과 육류 가공공장은 자체 생산제품의 안전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HACCP로 불리는 Process Control 시스템을 채택하고 이행해야 함
  - 모든 도축장은 유해 미생물의 1차적 오염원인인 배설물로 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자신들의 공정관리 시스템의 적절성을 입증하기 위해 E. Coli균속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실시해야 함
  - 모든 육류 처리공장은 최종제품이 유해 미생물로 부터 오염이 감소된 위생적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문서화된 표준작업공정(SOP :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을 개발 하고 이행해야 함

## 자료출처

- Aphis fresh fruits and vegetables import manual  
[http://www.aphis.usda.gov/import\\_export/plants/manuals/ports/downloads/fv.pdf](http://www.aphis.usda.gov/import_export/plants/manuals/ports/downloads/fv.pdf)
- CFR Title 9 - Animals and Animal Product Regulation  
<http://www.ecfr.gov>
-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http://www.fda.gov/Food/FoodSafety/FSMA/default.htm>

## 라벨링 제도

### 제1절 라벨링 제도 일반

#### □ 특징

- 식품라벨링 규정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위생 및 건강관리를 위해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라벨을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하게 식품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이 있음. 허위정보를 표시할 경우에는 부정 표시 식품(Misbranded Food)로 간주하여 수입이 금지됨

#### □ 기본표기사항

- 식품의 명칭은 통상적인 명칭을 사용해 표기하며 포장용기의 주표시면에 표기해야 하고 활자의 크기는 라벨에서 사용된 가장 큰 활자의 절반 크기 이상이 되어야 함
- 순중량의 표시는 주요면의 하단 30%위치에 표시하고 미국단위와 미터법단위로 함께 표시해야 함. 제조자, 포장자, 유통자의 명칭과 주소는 성분표시면과 같은 면에 기재해야 하며 예외가 없는 한 완전한 주소를 표시해야 함
- 성분표시는 라벨의 주요표시면, 측면 혹은 후면의 정보표시면에 표기할 수 있음

나 제조자, 포장자 혹은 유통자와 같은 면에 표시해야 함. 성분의 목록순서는 중량이 무거운 것에서 가벼운 것의 순으로 하고 통상명칭으로 기재해야 함. 또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성분도 반드시 표시해야만 함

#### □ 일반사항

- 식품표시사항(Label statements)은 주표시면(principle display panel ;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통상 보이는 면)이나 정보표시(Information panel ; 주표시면의 바로 오른쪽)에 기재함
- 주 표시면에는 식품명과 실중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
- 정보표시면에는 주 표시면에 기재되지 않은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의 명칭 및 주소, 원재료명과 영양표시 등과 같은 사항들을 표기함
-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의 명칭 및 주소를 표시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제조, 포장, 유통업자의 이름과 주소 : 제조, 포장, 유통업자와 제조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회사와 제품의 관계를 명시하는 ‘~에서 제조한’ ‘~에서 유통하는’과 같은 문구가 표시되어야 함
  - 거리주소 : 회사이름과 주소가 현행 전화번호부나 인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도시명, 주명(수입식품일 경우 국가명), 우편번호

#### □ 식품명(Statement of identity) 표기

- 식품명은 반드시 주 표시면에 표기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표시면의 인쇄 중 가장 큰 것의 1/2 이상의 크기이어야 함
- 식품이 일반적, 통상적 이름을 갖는 경우 이를 식품명으로 사용하며 일반적, 통상적 이름이 없을 경우에는 그 식품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이름을 사용하여 제품을 잘못 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식품명은 포장의 바닥과 평행하게 쓰여져야 함

- 식품표기는 포장된 식품이 액체가 아닐 경우 ‘가늘게 썰어진 것인지(sliced)’ ‘썰지 않은 것인지(unsliced)’ ‘반으로 잘라진 것인지(halves)’ 등의 식품형태를 명시해야 함
- 어떤 신제품이 기존에 있던 식품과 유사하며 기존 식품의 대체재로 사용될 때, 만약 그 신제품이 기존의 것보다 필수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함량이 낮다면 신제품에는 ‘모방’(imitation)이라는 표시를 해야 함
- ‘모방’(imitation)이라는 표기는 식품명과 같은 글자 크기와 선명도로 표시해야 함
- 과일이나 야채의 그림, 맛이나 외관, 라벨표기 등으로 소비자가 주스를 함유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음료는 주스(과일이나 야채의 천연즙)의 함량을 %로 표기해야 함
- 아래와 같이 향미(flavor)를 위해 소량의 주스가 함유된 음료에는 주스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됨
  - 제품에 ‘향미’(flavor) 또는 ‘향미의’(flavored) 라는 용어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 ‘주스’라는 용어가 원재료명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은 경우
  - 어떤 방법으로든 주스가 함유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경우
- 100% 주스로 만들어진 음료의 경우는 ‘주스’라고 표시할 수 있으나 100% 미만으로 희석된 음료는 음료, 드링크, 칵테일의 의미를 갖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또는 ‘희석(diluted) \_\_\_\_주스’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음

#### □ 내용물의 실중량(Net Quantity of Contents) 표기

- 내용물의 실중량이란 포장재나 용기 안에 담겨있는 식품의 양을 가리키는 라벨의 표시 사항임
- 내용물의 실중량은 별도 항목으로서 주표시면의 밑부분 30%이내에서 포장의 바닥면과 평행으로 쓰여져야 함

- 내용물의 중량은 미터법(grams, kilograms, milliliters, liters)과 미국 통상단위법(ounces, pounds, fluid ounces)에 따라 두가지로 표기되어야 함
- 미터법 표기 위치는 미국통상단위법 문구 위치의 앞, 뒤, 위, 아래 모두 가능함  
예) Net wt 1 lb 8 oz (680g)
- 내용물의 실중량이란 용기나 포장 안의 식품의 실중량만을 포함하며 용기나 포장지, 포장재의 무게는 포함되지 않음. 실중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채운 용기의 평균무게에서 빈포장용기, 뚜껑, 포장지의 평균무게를 뺀 것
- 일반적으로 용기안의 식품에 부가된 물이나 다른 액체는 실중량 표시에 포함됨

□ 원재료명 목록(Ingredient list) 표기

- 원재료명 목록(Ingredient list)이란 식품에 사용된 각각의 원재료를 주된 것부터 내림차순(중량이 가장 많은 것부터 가장 적은 것의 순서로 쓰는 방식)으로 나열한 것을 말함
- 원재료명 목록은 식품명,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의 주소 등이 있는 면(주 표시면이나 정보표시면)과 같은 면에 있어야 하고 영양표시,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 주소의 앞이나 뒤에 표시할 수 있음
- 원재료명은 규정에 다른 용어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일반적, 통상적 이름을 사용함  
예) 과학용어인 ‘sucrose’ 대신 ‘sugar’를 사용함.
- 허가된 방부제(preservative)를 식품에 첨가할 경우 원재료명에 그 방부제의 일반적 또는 통상적 명칭을 기재하고 아래의 예처럼 방부제의 기능을 명시해야 함  
- 예) ‘방부의’(preservative), ‘부패지연’(to retard spoilage), ‘곰팡이방지’(mold inhibitor), ‘향미보호’(to help protect flavor) ‘색상 유지증진’(to promote color retention)
- 향신료(spices), 천연착향료(natural flavors), 인공착향료(artificial flavors)는 원재료명 목록에 특정한 일반적, 통상적 이름을 기재하거나 ‘향신료

(spices) '천연착향료(natural flavors)' '인공착향료(artificial flavors)'라고 표시할 수도 있음

- 파프리카(Paprica), 튜메린(Tumeric), 샤프론(Saffron) 등 색소로도 사용되는 향신료는 '파프리카'와 같이 실제 이름을 기재하거나 '향신료와 색소'라는 용어로 표시함
- 인공색소의 표기는 공인된 색소의 경우 약어 또는 특정 이름을 사용하고 공인되지 않은 색소의 경우 '인공색소(artificial color)'라고 표시하거나 일반적 통상적 이름을 사용함
  - 예) 공인된 색소(Certified colors) : 'FD&C Red No. 40' 또는 'Red 40'
  - 비공인된 색소(Non Certified colors) : 'caramel coloring' 또는 'beet juice'

#### □ 영양표시(Nutrition labeling)

- '94년 5월 8일 이후로 표시되는 대부분의 식품에는 New Nutrition label을 의무화해야 함
- 다음의 식품들은 영양표시 면제대상이며 \*가 표시된 식품들은 영양정보가 제공되거나 강조표시가 된 경우에는 영양표시를 해야 함
  - \*소규모로 조제된 식품
  -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거나 가정으로 배달되어 바로 먹는 식품
  - \*제조되는 장소에서 판매되는 조제식품(요리한 고기, 훈제생선, 소시지, 피자, 사탕류)
  - \*인스턴트 커피(plain, 무가당)나 대부분의 향신료 등과 같이 특별한 영양소가 없는 식품
  - 조제분유와 4세 미만의 영아, 유아용 식품(이 종류의 식품에 대해서는 수정된 라벨규정이 있음)
  - 식사 보조용 식품(dietary supplements)
  - 의료용 식품(medical foods)

- 소매되기 전 가공이나 포장을 위해 큰 단위로 수송되는 식품
  - \*생식품이나 해산물(자발적으로 겉면에 영양표시를 할 수 있음)
  - 주문 가공생선(Custom-processed fish)이나 사냥육(game meat)
  - 상자 단위의 계란(영양정보를 뚜껑 안쪽이나 상자 안에 삽입)
  - “이 포장은 소매판매용이 아님”이라고 표시되어 안에 여러 단위의 포장이 되어 있고 밖에 모든 필요한 표시문구가 있는 경우
  - Self-service bulk foods : 영양표시는 겉면에 하거나 본래 용기에 잘 보이도록 표시함
  - 판매용이 아닌 소비자를 위해 증정용으로 만든 식품
- ‘영양정보(Nutrition Facts)’의 표시는 원재료명,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의 이름, 주소와 함께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음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면(alternative panel)’에 표시할 수도 있음
  - 포장이 세로로 공간이 부족해서 위와 같이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로로 표시할 수 있음
  - 아침식사용 씨리얼이나 날개로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과 같이 한 포장 안에 여러개의 소포장이 되어 있는 제품(소포장 단위 식품)의 경우에 제조자는 각각의 소포장에 일일이 영양정보 표시를 하거나 한 개의 포장에 통합적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제 2 절 품목별 표기방법

### 1. 건강보조식품

#### □ 관련법규

-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DSHEA)
- DSHEA에 근거한 건강보조식품의 라벨링 규정은 1997년 9월 23일 입안되어 1999년 3월 23일부터 효력 발생

#### □ 라벨링 요구조건

- 성분진술(Statement of Identity) : 예, “ginseng”
- 순중량(Net quantity) : 예, “60 capsules”
- 구조-기능 주장 및 진술(Structure-function claim and statement) : 예, “This statement has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 복용법(Direction for use) : 예, “Take one capsule daily.”
- Supplement Facts panel(보충정보란) : 일반식품의 영양분석표와 유사한 것으로 1회분 용량, 활성성분 함량 등이 기재
- 성분명세 : 일반명으로 함량이 많은 것에서 작은 것의 순
- 제조업체나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 이름 및 주소
- 라벨에 “dietary supplement”라는 말을 인쇄
- 유통기한표기는 필수사항이 아니며 표기시, 합법적인 자료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함

## 2. 신선농산물

### □ 예외조항

- 원재료명 표기 : 이 조항은 2개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식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신선 농산물의 경우 그 자체가 하나의 성분을 이루므로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영양분석표 : 영양분석표 면제대상으로 포장표기를 할 필요가 없으나 주요 식품의 경우 구매시점(소매점)에서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진열대 별도표기를 권장함

## 제 3 절 라벨링 사례

### □ 통관 또는 현지 유통시 문제 사례

- 라벨링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 현재 미국에 반입되는 한국식품 가운데 15%정도가 라벨링을 하지 않거나 부정표시를 해서 수입이 거부되고 있음.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더라도 현지에서 반입될 때 스티커 작업을 하면 통관시 전혀 문제가 없음. 일부 제품의 실제 내용물과 라벨링이 틀릴 경우, FDA테스트를 거쳐 부정표시로 반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 제 4 절 통관보류 및 억류사례

### □ 관련 법 및 규정

- 연방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FDCA)에 의거 ChapterIV-Food, Section 402-Adulterated Food 그리고 Section403-Misbranded Food(21USC-Section342/Section343)에 따른 관련법은 아래와 같음
  - The 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 of 1990(식품라벨링 및 교육법)
  - The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of 1994(건강보조식품 및 교육법)
  -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바이오테러리즘법)
  - The Food Allergen Labe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4(식품알러지 라벨링 및 소비자보호법)
- The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of 1996(바른 포장 및 라벨링법)은 15USC Chapter 39-Fair Packaging and Labeling Program, Section1451-1461을 따름
- 수입식품표기와 관련해서는 The Tariff Act of 1930(관세법)에 의거 19USC Section 1304-Marking of imported articles and containers를 따름
- 미 식품의약국규정(FDA Regulations)은 미 연방법 21 CFR Part100-General, Part101-Food labeling, Part105-Food for Special Dietary Use, Part119-Dietary Supplements that present a significant or unreasonable risk, Part190-Dietary Supplement and other Parts 102-189에 따름
- CBP Regulations(미세관국토안보부규정)으로 연방법 19CFR-Part1 134 Marking of Country of Origin을 따름

산업 가이드

- Guidance of Industry : A Food Labeling of 2008
- Guidance of Industry : A Dietary Supplement Labeling Guide

관련규정 세부내용 검색링크

- <http://www.fda.gov/Food/LabelingNutrition/FoodLabelingGuidanceRegulatory>
- <http://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legislation/default.htm>
- <http://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fr/CFRSearch.cfm>
- <http://www.fda.gov/Food/GuidanceComplianceRegulatoryinformation>

## 통관보류 및 억류사례

### 1. 일반현황

- 수입관리/통제제도의 하나로서 미 식품의약국(FDA)에서 식/의약/화장품 등 소비자의 위생과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을 통제
- 외국식품의 대미수출시에는 FDA에 반드시 통관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에 통과치 못하는 경우 억류처리
- FDA 억류시 명시된 기간 내 개선, 보완 또는 이상없음을 증명하면 억류해제 가능
- 미국정부는 크게 다음과 같이 크게 2 종으로 분류되는 식품에 대해 수입을 거부하고 있음
  - 불량(Adulterated) 식품 : 불량품, 비위생적인 식품, 불결하다고 판정되는 식품, 또는 제조과정이 비위생적인 식품들을 포함
  - 부정표시(Misbranded)식품 : 불분명하거나 부정확한 영양분석표가 부착된 식품, 과장된 내용의 식품설명서나 포장이 된 식품들을 포함
- 미국정부는 또한 위생검사에 연관된 문서들이 미흡한 식품이나 제조업체의 검사, 검역이 불가능한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농림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한 FDA가 발간한 “Laws & Regulations Enforced by the U.S. Food and Durg Administration”을 참조

## 2. 한국식품의 통관역류현황

- 주요 역류제품은 음료류, 캔디류, 인삼류, 곡류, 수산물 등이 있으며 주요 역류 사유로는 잘못된 라벨링, 제조업자 정보 미표기, 미등록 약산성식품, 무허가 색소, 불결한 제조 등이 있음

### ■ 연도별 통관역류 추이 ■

(단위 : %)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6
건수	400	213	113	135	347	284	196	403	260

### ■ '11년 품목별 위반건수 ■

구분		위반건수
총계		403
농산물	곡류	16
	면류	10
	캔디	58
	과자(스낵 등)	32
	음료	99
	소스류	18
	인삼류	21
	농산물 기타	19
	(농산물계)	(273)
수산물	멸치	75
	수산물	55
	(수산물계)	(130)

## 3. 주요 한국식품 통관보류 및 역류사례

### □ 멸치

- 멸치를 포함 내장을 제거하지 않은 생선은 보툴리움균(Clostridium botulium)

존재 가능성이 있어 기본적으로 통관보류

- 5인치(12.7cm) 이상은 내장 제거하지 않은 이상 통관 불가
- 5인치 미만인 경우
  - 1) 내장 문제를 해결(내장 제거)했다는 서류 또는 증명 제출시 통관
  - 2) 내장 미제거시 미국 HACCP Plan에 따라 보툴리움균이 검출되지 않는 증빙 제출하여 인정받는 경우 통관
  - 3) 관련 증빙 제출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할 경우 반송, 폐기, 실험실 검사(화주 비용) 택일

#### □ 굴

- 미 FDA의 지정해역 현지 점검('12.3월)시 노로바이러스 검출로 해역의 심각한 오염을 우려, 수입중단 조치('12.5.1)
  - FDA권고에 따라 주정부 차원에서 유통업체, 소매상, 요식업체 등에게 자발적 리콜을 권고 및 10개주 이상 리콜 진행 중

#### □ 팡이버섯

- 제품에 벌레가 나와 보류되고 정밀 조사후 제품 폐기
- 제품에 벌레발견 되거나 흙이 묻어 있으면 USDA 검사관들이 통관보류시키고 정밀검사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국으로 돌려보내거나 제품폐기를 요구하는바 제품 선별 및 포장시 각별한 주의 요망

#### □ 고추장

- FDA통관에 자주 억류되는 상품중의 하나로 이물질 및 깨끗하지 못한 사유로 억류되어 경우가 많음
- 특히 이물질이 파리, 쥐털 등이 발견될 경우 수출국으로 돌려보내거나 폐기 처리
- 제조공정에 특별히 청결관리가 필요

□ 인삼(인삼제품)

- 뿌리인삼제품에 농약이 검출되어 통관보류 사례발생
- 농약잔류검사를 철저히 하는바, 미국이 허용하는 농약사용 및 철저한 수출품 검사 필요

□ 오징어(건조, 구이)

- 이물질 발견으로 통관 보류되어 폐기하는 사례가 많음
- 오징어에 대한 검사가 잦으며 이물질 함유, 비위생적인 가공방법, 라벨링문제 등으로 통관 거부되는 횟수가 많음

## 주요국 수출현안 모니터링 - 일본·미국

발 행 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발 행 일 : 2012년 1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양재동 aT센터)

문 의 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수출정보팀  
02)6300-1408

---

※ 우리 공사는 임직원에 대한 부정비리 신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신자부담 「24시간 부정비리 신고 모바일 핫라인(080-112-2580)」을 개설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은 비밀이 절대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KATI([www.kati.net](http://www.kati.net))>자료실>발간책자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